

광주지방법원 2020. 7. 9 선고 2019가단53630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

담당변호사 김철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

변론 종결 2020. 5. 28

판결 선고 2020. 7. 9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87. 3. 26. 조카인 G 소유의 광주 동구 H 대 39.6㎡ 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87. 3. 26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.

나. 망 I는 1989. 8. 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. 8. 4.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, 채무자 G, 근저당권자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 원고는 1991. 10. 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. 7. 2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2017. 8. 14.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,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G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채무 1억 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오도록 하였다.

이에 따라 G는 2017. 8. 28. 직접 원고가 준 1억 원을 가지고 망 I에게 "고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으려 한다"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고, 같은 날 망 I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.

그 후 원고는 2017. 8. 30.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망 I는 2019. 9. 10. 사망하였고, 피고들은 망 I의 자녀들로 법정상속인들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증인 G의 일부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않는 무효의 등기이거나 원고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하여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, 근저당권자인 망 I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아 이익을 얻고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.

따라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2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살피건대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또한 원고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,앞서 살펴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,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G이 망 I에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한 것은 적법한 채무의변제일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(G이 망 I에게 변제한 1억 원의출처가 원고일 뿐 원고가 망 I에게 위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).

따라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 차웅